

[별표3]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수혜 금액 <개정 2013.07.24, 2014.02.07, 2015.11.10, 2016. 2. 3>

상담복지정책대학원 신(편)입학 학비감면 규정

구분	기관	감면율	감면대상	비고
정부기관	협약기관	50%	* 학군제휴협약에 의한 군위탁생 * 5급 이상 공무원	정규직 및 6개월 이상 전일제 비정규직에 한함[제출서류: 재직증명서(정규직, 비정규직 명시)]
	기타기관	30%	국가, 지방 공공기관공무원(행정,입법,사법, 국공사립교육, 경찰, 군인및군속, 연구등)(단, 대학조교는 제외)	
유관기관	협약기관	30%	각종 사회복지/상담 시설 및 단체 직원(사회복지시설, 상담기관, 아동 및 청소년시설, 영유아 보육기관 등)	*우리대학 또는 대학원과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있는 경우 적용.
	기타기관	25% <변경>	각종 사회복지/상담시설 및 단체 직원(사회복지시설, 상담기관, 아동 및 청소년 시설, 영유아 보육기관 등)	*정규직 및 6개월 이상 전일제 비정규직에 한함[제출서류: 재직증명서(정규직, 비정규직 명시)]
광운대학	총장 (대학원장) 추천	50%	총장(대학원장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
	교직원	65%	교수, 직원	정규직 및 6개월 이상 전일제 비정규직에 한함[제출서류: 재직증명서(정규직, 비정규직 명시)]
	가족	50%	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	제출서류: 가족증명원
	졸업생	30%	정규학사과정 졸업생	제출서류: 졸업증명서
		20%	타 대학원 및 본 대학원 졸업생	제출서류: 졸업증명서
10%	학점은행제 등 비정규과정 졸업생	제출서류: 졸업증명서		
가족	부부, 부모, 자녀, 형제	10%	2인 중 1인 (단, 교직원 및 그 자녀의 경우는 해당 없음)	제출서류: 가족증명원
		20%	3인 이상 중2인(단, 교직원 및 그 자녀의 경우는 해당 없음)	

1. 시행일

- 2013학년도 1학기 신(편)입학생부터 적용

2. 시행원칙

- 학비감면 내에서 이중 수혜 불가(단, 가족감면은 제외)
- 학기감면과 장학금의 이중 수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함
-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, 2개 이상의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.

3. 제출서류

- 이 감면기준에 의거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 학기 등록시 해당 서류를 제출

4. 의무사항

- 감면 적용 해당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감면 항목의 효력이 변경(입사, 퇴사 등) 되면 교학팀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감면 혜택을 취소 또는 신규 해당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급함.